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검 토 보 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28호)

2026. 2.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                                      | 1  |
| III . 주요내용 .....                                     | 2  |
| IV . 검토의견 .....                                      | 6  |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                            | 6  |
| 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필요성 검토(안 제1조) .....              | 15 |
| 3. 조문별 검토 .....                                      | 22 |
| 가. 서비스산업·서비스 수출 등 정의(안 제2조) .....                    | 22 |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                       | 27 |
|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                           | 29 |
| 라.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2장 :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 34 |

|                                                             |    |
|-------------------------------------------------------------|----|
| 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안 제3장 : 제14조부터<br>제19조까지) ..... | 51 |
| 바.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안 제4장 :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                 | 57 |
| 사. 보칙(안 제5장 :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부칙 .....                   | 79 |
| <br>[참 고] .....                                             | 81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9.

다. 회 부 일 : 2025. 12. 22.

## II. 제안이유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 하에서 국가의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비스산업 지원은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이에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성과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의무화하고,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진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

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 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부터 제11조).

마.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

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하여야 하며,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아. 정보통신·인공지능·블록체인·데이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하며, 지원받은 모델 중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경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센터에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활성화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하며,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및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

타.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재정 수요 감축 효과, 수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세제·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과 금융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거.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함(안 제31조).

너.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과제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

도록 함(안 제32조).

더.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  
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34조).

## IV. 검토의견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논의경과

제정안은 인공지능·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융·복합화의 확산과 기술진보주기의 단축으로 법과 제도가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 등 5개의 장과 36개의 조문 및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 칙                |                                                                                                                                                                                                                                                                     |
| ○ 목적(안 제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li> <li>-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li> </ul>                                                               |
| ○ “서비스산업”의 정의 등(안 제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li> <li>- 서비스수출 :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li> </ul> |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

|                                             |                                                                                                                                                                                                                                                                                                                                      |
|---------------------------------------------|--------------------------------------------------------------------------------------------------------------------------------------------------------------------------------------------------------------------------------------------------------------------------------------------------------------------------------------|
| 등(안 제4조)                                    | <p>정하는 바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li> </ul>                                                                                                                                                                                         |
| 제2장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
|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li>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회에 제출</li> <li>- 재경부장관은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li> </ul>                                                    |
|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갈등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둠</li> <li>- 재경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위원장, <b>위촉위원 과반수 여성으로 위촉</b></li> <li>-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li> <li>- 위원회는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li> <li>- 갈등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갈등조정기구 통한 합의사항 존중하여야 함</li> </ul> |
| 제3장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                                                                                                                                                                                                                                                                                                                                      |
|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안 제15조 및 제1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성과 정부인증 및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li> </ul>                                                                                                                                                                                                                          |
|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안 제1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인공지능·블록체인 및 데이터기술 등(“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li>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서비스산업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전략, 신기술과 해당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함</li> </ul>                                                                              |
| 제4장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                                                                                                                                                                                                                                                                                                                                      |
| ○ 서비스산업으로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전환 및 다른 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지원 활성화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li> </ul>                                                                                                                                                                                                                             |

|                                    |                                                                                                                                                                                                                                                                                                                                                                                                                                          |
|------------------------------------|------------------------------------------------------------------------------------------------------------------------------------------------------------------------------------------------------------------------------------------------------------------------------------------------------------------------------------------------------------------------------------------------------------------------------------------|
| 업과의 융·복합 지원<br>(안 제20조)            |                                                                                                                                                                                                                                                                                                                                                                                                                                          |
| ○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br>(안 제21조)  | - 재경부장관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위해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 신사업의 인·허가 등<br>(안 제2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 하려는 자는 인·허가등 신청 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 및 제재처분 여부 등에 대한 확인(비조치의견)을 신청할 수 있음</li> <li>- 비조치의견 신청은 30일 이내 회신해야 하며, 회신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어떠한 제재처분도 불가함</li> <li>- 정부 및 지자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의 인·허가 등에 있어 법령이나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 반려 또는 불합리한 보완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li> <li>- 정부 및 지자체는 인·허가 등 이후 중대한 위해 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li> </ul> |
| ○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안 제24조)       | -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해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 ○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안 제25조)            | -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고려해 산학연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할 수 있음                                                                                                                                                                                                                                                                                                                                                                                  |
|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안 제26조) | - 정부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음                                                                                                                                                                                                                                                                                                                                                                                                                 |
| ○ 전문인력양성기관(안 제27조)                 | -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산업 인력을 재교육 또는 재훈련하는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안 제28조)           | - 성장성, 혁신성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우선적 지원 실시                                                                                                                                                                                                                                                                                                                                                                                |
| ○ 전문연구센터 지정<br>(안 제3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 설치</li> <li>※ 재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 가능</li> </ul>                                                                                                                                                                                                                                                                              |
| 제5장 보 칙                            |                                                                                                                                                                                                                                                                                                                                                                                                                                          |

※ 표의 주요 내용 중 굵은 글씨는 송언석의원안·윤준병의원안과 비교할 때 김영환의원안에서 새로이 추가된 내용임.(부처 명칭 관련은 제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지난 2011년 정부가 R&D 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정부적 협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됨.

정부는 제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2012년 7월 동일한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sup>1)</sup> 및 세 차례의 소위원회<sup>2)</sup> 심사를 실시한 바 있음.

심사과정에서는 위 법률안이 이른바 “의료 영리화”를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보건·의료” 분야를 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음. 이후로도 수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음.<sup>3)</sup>

제20대 국회에서는 개원일에 맞춰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이명수의원 대표발의)로 동일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재차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sup>4)</sup>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sup>5)</sup> 심사를 실시하였음.

---

1) 제329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14년12월4일)

2)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5년11월9일), 제7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5년 12월7일), 제338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6년1월8일)

3) 제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년 2월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상정되지 못함.

4) 제346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16년11월1일)

5) 제346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6년11월17일),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

여전히 보건·의료 분야 적용여부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는바, 2018년 김정우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되기도 하였음. 최종적으로는 위 법률안 두건 모두 입법필요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2018년 8월 이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원욱의원 대표발의안과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이 같은 날 각각 발의<sup>6)</sup>되었고, 이후 류성걸의원 대표발의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sup>7)</sup>, 경제재정소위원회<sup>8)</sup> 및 안전조정위원회<sup>9)</sup>가 각각 한 차례 열려 법안을 심사하였음.

이원욱의원안은 제20대국회 당시 김정우의원안을 기초로 했고, 추경호·류성걸의원안은 보건·의료 분야 적용여부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감안하여 보건·의료분야 적용 제외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였음. 류성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분야별 정책 및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작성·관리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필요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2021년 12월 이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 재정소위원회(2018년2월1일),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8년8월24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8년8월29일)

6) 2020. 07. 03.

7)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1년2월25일)

8)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0년11월23일)

9)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1년12월3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과거 논의경과]

| 구 분        | 발의(제출)자      | 발의(제출)일     | 비 고                                            |
|------------|--------------|-------------|------------------------------------------------|
| 제18대<br>국회 | 정부           | 2011.12.30. | 공청회·법안소위 미실시                                   |
| 제19대<br>국회 | 정부           | 2012.07.20. | 보건·의료 분야 예외여부에 대한<br>이견으로 미합의                  |
|            | 김용익의원 등 10인  | 2016.02.18. |                                                |
| 제20대<br>국회 | 이명수의원 등 122인 | 2016.05.30. | 입법필요성과 보건·의료 분야<br>적용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미합의           |
|            | 김정우의원 등 11인  | 2018.08.21. |                                                |
| 제21대<br>국회 | 이원욱의원 등 12인  | 2020.07.03. | 입법필요성과 기획재정부가<br>서비스산업을 총괄하는 것에 대한<br>이견으로 미합의 |
|            | 추경호의원 등 16인  | 2020.07.03. |                                                |
|            | 류성걸의원 등 10인  | 2020.11.09. |                                                |

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본 법률안과 함께 송언석의원 및 윤준병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일 취지 법률안<sup>10)</sup>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되었음.

10)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5032, 2024.10.30. 발의),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210057, 2025.4.23. 발의)

[제22대국회 및 제21대국회 제정안 간 주요 내용 비교]

| 구 분                                               | 제22대국회                                                                         |                                                                                    |                                                                                              | 제21대국회                                                                                           |                                                                                                                          |                                                                              |
|---------------------------------------------------|--------------------------------------------------------------------------------|------------------------------------------------------------------------------------|----------------------------------------------------------------------------------------------|--------------------------------------------------------------------------------------------------|--------------------------------------------------------------------------------------------------------------------------|------------------------------------------------------------------------------|
|                                                   | 송언석<br>의원안                                                                     | 윤준병<br>의원안                                                                         | 김영환<br>의원안                                                                                   | 이원욱<br>의원안                                                                                       | 추경호<br>의원안                                                                                                               | 류성걸<br>의원안                                                                   |
| 보건·의료<br>분야 적용 제외<br>범위                           | 적용제외 ×<br>(서비스산업<br>에 관하여 다<br>른 법률에 특<br>별한 규정이<br>있는 경우에<br>는 그 법률<br>따름)    | 「의료법」,<br>「약사법」,<br>「국민건강보<br>험법」 및<br>「국민건강증<br>진법」에서<br>규정한 사항<br>은 이 법 적<br>용제외 | 「의료법」,<br>「약사법」,<br>「간호법」,<br>「국민건강보<br>험법」 및<br>「국민건강증<br>진법」에서<br>규정한 사항<br>은 이 법 적<br>용제외 | 「의료<br>법」, 「약<br>사 법」,<br>「국민건강<br>보 험 법」<br>및 「국민<br>건 강 증 진<br>법」에서<br>규정한 사<br>항은 이 법<br>적용제외 | 「의료법」<br>제15조, 「국<br>민건강보험<br>법」 제5조,<br>제41조, 제42<br>조 등 다른<br>법률에 특별<br>한 규정이 있<br>는 경우에는<br>다른 법률에<br>서 정하는 바<br>에 따름 | 「의료<br>법」, 「약<br>사 법」,<br>「국 민 건<br>강 보 험<br>법」에서<br>규정한 사<br>항은 이 법<br>적용제외 |
| 위원회<br>명칭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                                                                                    |                                                                                              | 서비스산<br>업발전위<br>원회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                                                                              |
| 위원회<br>회의록<br>공개 및<br>계획 국<br>회 제출                | 규정 없음                                                                          | -회의록 작성<br>및 공개<br>-기본계획·<br>시행계획<br>국회 제출                                         | -회의록 작성<br>및 공개<br>-시행계획<br>국회 제출                                                            | -회의록 작<br>성 및 공개<br>-기본계획·<br>시행계획<br>국회 제출                                                      | 규정 없음                                                                                                                    |                                                                              |
| 갈등조정<br>기구<br>구성·운영                               | 위원회 내<br>‘갈등 조정 기<br>구’ 설치                                                     | 규정 없음                                                                              | 위원회 내<br>‘갈등 조정 기<br>구’ 설치                                                                   | 규정 없음                                                                                            |                                                                                                                          |                                                                              |
| 서비스<br>산업으로<br>산업전환<br>및 다른<br>사업과의<br>융·복합<br>지원 | 서비스산업으<br>로의 사업전<br>환 및 다른<br>산업과의 융·<br>복합 지원 활<br>성화 위한 시<br>책 수립·시행<br>및 지원 | 규정 없음                                                                              | 서비스산업으<br>로의 사업전<br>환 및 다른<br>산업과의 융·<br>복합 지원 활<br>성화 위한 시<br>책 수립·시행<br>및 지원               | 규정 없음                                                                                            |                                                                                                                          |                                                                              |

| 구 분                                          | 제22대 국회                                                                                                                              |            |                                                                                                                                                                                        | 제21대 국회    |            |            |
|----------------------------------------------|--------------------------------------------------------------------------------------------------------------------------------------|------------|----------------------------------------------------------------------------------------------------------------------------------------------------------------------------------------|------------|------------|------------|
|                                              | 송언석<br>의원안                                                                                                                           | 윤준병<br>의원안 | 김영환<br>의원안                                                                                                                                                                             | 이원욱<br>의원안 | 추경호<br>의원안 | 류성걸<br>의원안 |
| 서비스<br>산업 융합<br>연구개발<br>혁신지원단                | 기재부장관은<br>융합연구개발<br>혁신지원단 구<br>성·운영 가능                                                                                               | 규정 없음      | 재경부장관은<br>융합연구개발<br>혁신지원단 구<br>성·운영 가능                                                                                                                                                 | 규정 없음      |            |            |
| 신사업의<br>인·허가<br>등                            | -신사업<br>인·허가 시<br>법령이나<br>규정 미비<br>등을 이유로<br>거부, 반려<br>또는 불합리한<br>보완 금지<br>-인·허가 후<br>사후보완 요구<br>가능하며,<br>해당 사업자는<br>성실히 이행<br>하여야 함 | 규정 없음      | -인·허가등<br>신청 전<br>비조치의견<br>신청 가능<br>(30일 내 회신)<br>-신사업<br>인·허가 시<br>법령이나<br>규정 미비<br>등을 이유로<br>거부, 반려<br>또는 불합리한<br>보완 금지<br>-인·허가 후<br>사후보완 요구<br>가능하며,<br>해당 사업자는<br>성실히 이행<br>하여야 함 | 규정 없음      |            |            |
| 서비스산<br>업 전문인<br>력 수급동<br>향 조사<br>전문인력<br>양성 | -수급동향 조사를 활용해 학생 정원운영 등<br>에 반영 가능<br>-수급동향 조사 고려해 산학연과 연계한 전<br>문인력 양성 추진                                                           |            |                                                                                                                                                                                        | 규정 없음      |            |            |
| 계약에<br>의한 직<br>업교육훈<br>련과정<br>등의 설<br>치 지원   | -계약학과등 설치·지원 가능                                                                                                                      |            |                                                                                                                                                                                        | 규정 없음      |            |            |

| 구 분                          | 제22대국회                                       |                                                          |                                 | 제21대국회                                                   |                       |                                                                 |
|------------------------------|----------------------------------------------|----------------------------------------------------------|---------------------------------|----------------------------------------------------------|-----------------------|-----------------------------------------------------------------|
|                              | 송언석<br>의원안                                   | 윤준병<br>의원안                                               | 김영환<br>의원안                      | 이원욱<br>의원안                                               | 추경호<br>의원안            | 류성걸<br>의원안                                                      |
| 서비스<br>산업<br>옴부즈만<br>설치      | -규제정비 및 애로·건의사항<br>해결 위해 ‘서비스산업 옴<br>부즈만’을 둠 |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
| 중점육성<br>서비스<br>산업<br>선정·지원   | -중점 육성<br>서비스산업<br>선정·지원                     | -중점 육성<br>서비스산업<br>선정·지원<br><br>-저부가가치<br>서비스산업<br>선정·지원 | -중점 육성<br>서비스산업<br>선정·지원        | -중점 육성<br>서비스산업<br>선정·지원<br><br>-저부가가치<br>서비스산업<br>선정·지원 |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br>선정·지원 |                                                                 |
| 전문연구<br>센터 설<br>치            | 전문연구센터<br>설치<br>(※위원회 심의<br>불요)              | 위원회<br>심의를 거쳐<br>전문연구센터<br>지정                            | 전문연구센터<br>설치<br>(※위원회 심의<br>불요)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br>전문연구센터 지정                                 |                       |                                                                 |
| 서비스<br>산업 관<br>련 통계<br>작성·관리 |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작성·관리                        |                                                          |                                 | 규정 없음                                                    |                       | 기 재 부 장<br>관은 통계<br>청장과 협<br>의하여 서<br>비 스 산 업<br>관련 통계<br>작성·관리 |

## 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안 제1조)

| 제 정 안                                                                                                                                                                                                                                                                                                                                         |
|-----------------------------------------------------------------------------------------------------------------------------------------------------------------------------------------------------------------------------------------------------------------------------------------------------------------------------------------------|
| <p>○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융·복합화의 확산과 기술진보주기의 단축으로 법과 제도가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li> <li>-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li> </ul> |

제정안은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비스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혁신하고,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 모두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도 제조업 대비 4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27위임.<sup>11)</sup>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고용 비교]

(2023년 기준, 단위: %)

| 구 분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
| 부가가치 비중 | 63.4 | 81.3 | 70.3 | 69.2 | 80.1 |
| 고용 비중   | 70.7 | 80.1 | 73.6 | 75.3 | 83.2 |

자료: 재정경제부

11) 주요국 서비스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비교(2023, 만 달러): (한국) 7.8 (프랑스) 10.3 (미국) 15.2 (독일) 10.0 (영국) 9.3

OECD는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생산성 양극화 (productivity dispersion)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임을 지적하기도 하였음.<sup>12)</sup>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 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에 대한 진입규제와 서비스 R&D 부족 등에 기인한다는 입장임. 정부는 2001년 이후 40여 차례의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의 서비스산업 특성을 보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있어 다수 부처가 함께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산업 융·복합 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제정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처별 규제를 재정경제부가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장기적 관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개별 부처 간 업무중복과 권한 다툼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규

---

1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7.

제가 중첩되고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주도로 중장기적·종합적 육성전략 하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규제로 인하여 신산업 육성·성장이 지연된 사례]

| 분야   | 사례                                                                                                                                              |
|------|-------------------------------------------------------------------------------------------------------------------------------------------------|
| 숙박   | ▶ (공유숙박) 관광진흥법상 도시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금지<br>* 현재 규제샌드박스 시행중                                                                                          |
| 모빌리티 | ▶ (공유승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되어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는 국내서비스 불가,<br>승합차·기사 알선을 통한 운송 서비스인 ‘타다’는 알선 금지를 명문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
| 금융   | ▶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인은 실명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가 불가능하여, 가상자산 투자·신규사업 개시 등 시장 육성에 제약                                                                      |
| 법률   | ▶ (법률)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은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알선·중개행위 해당 여부 관련 변협과의 법적 분쟁으로 서비스 정착·고도화 지연                                                               |
| 기타   | ▶ (공유미용실) 공중위생관리법상 1개 사업장 내 2개 이상 일반미용업 영업시 각각 시설·설비 갖추어야하여,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불가능<br>* 현재 규제샌드박스 시행중이나, 제도화 지연으로 사업운영자의 불확실성 존재                   |

자료: 재정경제부

둘째, 부처 간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조정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음.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적정 비율<sup>13)</sup>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

13) 제정안은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 부처가 연관된 산업 융·복합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 본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부가 지난 2024년 12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sup>14)</sup>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본 법률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함으로써 본 법률에 따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구속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sup>15)</sup>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도의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바,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관광진흥법」, 「금융지주회사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

14) [참고1] 자료 등 참조

15)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법률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본법 제정 실익이 크지 않음.

서비스산업은 그 범주가 광범위하고 업종별 특성과 발전전략이 상이하므로 서비스산업 발전은 개별 규제완화나 개별 진흥법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이전의 국회 심사 당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둘째,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60%의 부가가치, 70%의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전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전략과 이에 따라 파생된 산업 특수성에 기인한 구조적인 것으로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성격이 다르며, 정부 주도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님.

[법 제정 필요성 관련 제19대~제21대 국회 심사 요지]

| 구 분        | 논 의 요 지                                                                                                                                                                                                                                                                                                                                                                                                                                                                                                                                                                                                                                                                                                                                                                                                  |
|------------|----------------------------------------------------------------------------------------------------------------------------------------------------------------------------------------------------------------------------------------------------------------------------------------------------------------------------------------------------------------------------------------------------------------------------------------------------------------------------------------------------------------------------------------------------------------------------------------------------------------------------------------------------------------------------------------------------------------------------------------------------------------------------------------------------------|
| 제19대<br>국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사항을 담당해야 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li> </ul> </li> <li>○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질 우려가 있음</li> <li>- 이미 개별 산업에 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
| 제20대<br>국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산업구조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 필요성이 있고, 개별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li> <li>- 기본법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획재정부가 거시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li> <li>- 국가 전체적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li> </ul> </li> <li>○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법 제정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확신이 없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li> <li>-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성격이 다르므로, 기본법 제정보다는 다른 발전전략의 모색이 필요함</li> <li>- 규제 완화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여 판단하게 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li> <li>- 이 법률이 제정되면 서비스산업이 발전되고, 제정되지 않으면 발전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음</li> <li>- 정부 주도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li> <li>- 대기업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기본법 제정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li> </ul> </li> </ul> |
| 제21대<br>국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찬성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과 여러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있는 흐름에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을 직접 관장하면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li> <li>- 보건·의료분야 적용 제외 규정을 두더라도 우려가 잔존함</li> <li>- 이 법률이 제정되면 서비스산업이 발전되고, 제정되지 않으면 발전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음</li> <li>- 이미 개별 산업에 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li> <li>- 정부 주도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li> </ul> </li> </ul>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제정안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억 5,000만원, 2031년 2,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3,000만원(연평균 4,6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함.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연평균 |
|---------------------------------------|------|------|------|------|------|-----|-----|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br>(안 제5조)            | 130  | -    | -    | -    | -    | 130 | 26  |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br>설치·운영<br>(안 제9조 및 제10조) | 20   | 20   | 20   | 20   | 20   | 100 | 20  |
| 합계                                    | 150  | 20   | 20   | 20   | 20   | 230 | 46  |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 조문

| 제정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b>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융·복합화의 확산과 기술진보주기의 단축으로 법과 제도가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3. 조문별 검토

#### 가. 서비스산업·서비스 수출 등 정의(안 제2조)

| 제 정 안                                                                                                                                                           |  |
|-----------------------------------------------------------------------------------------------------------------------------------------------------------------|--|
| ○ “서비스산업”의 정의(제1호)                                                                                                                                              |  |
| -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                                                              |  |
| ○ “서비스 수출”의 정의(제4호)                                                                                                                                             |  |
| -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  |
| 가.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  |
| 나.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  |
| 다.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  |

안 제2조제1호는 “서비스산업”을 「통계법」 제22조제1항16)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업 범위는 아래와 같음.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서비스업]

| 코드 | 대분류 명칭                 | 코드 | 대분류 명칭                   |
|----|------------------------|----|--------------------------|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G  | 도매 및 소매업               | O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H  | 운수 및 창고업               | P  | 교육서비스업                   |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J  | 정보통신업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 K  | 금융 및 보험업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L  | 부동산업                   | T  |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
| M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U  | 국제 및 외국기관                |

16)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난 제18대 및 제19대 국회 당시 심사되었던 법률안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sup>17)</sup>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안은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청장<sup>18)</sup>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명시하였고, 동 제정안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난 논의 과정에서는 ‘고시’로 위임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sup>19)</sup>이 있었는바, 주요 서비스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밖의 서비스업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sup>20)</sup>

17)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8) 현행 국가데이터처장

19)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5년11월9일)

20)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안 제2조제4호는 “서비스 수출”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환거래법」<sup>21)</sup>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sup>22)</sup>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목으로는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및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이 규정되어 있음.

-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서비스 수출”은 제21대국회까지 논의된 법안에는 정의되지 않았으나, 동 제정안 및 송언석의원안에서 새로이 정의되었음.<sup>23)</sup> 다만, 이전의 법안에도 정의가 없었을 뿐 여러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 제정안 조문

| 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말한다.</li> <li>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li> <li>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및 서비스 간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li> <li>4. “서비스 수출”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li> </ol> |

23) 참고로, 제22대국회에 발의된 윤준병의원안에서는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제 정 안                    |
|--------------------------|
| 가.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
| 나.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
| 다.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 제 정 안                                                                                                                                                                                                                   |
|-------------------------------------------------------------------------------------------------------------------------------------------------------------------------------------------------------------------------|
| <p>○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노력(제1항·제2항)</li> <li>- 관련 정책 추진 시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생산성 향상” 간 균형 유지 노력(제3항)</li> </ul> |

안 제3조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성’과 ‘경쟁력·생산성 향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영리화 등을 비롯한 공공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 제3조제3항과 같이 공공성과 경쟁력·생산성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봄.

### ※ 제정안 조문

| 제정안                                      |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산업의 |

### 제정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 향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

| 제 정 안                                                                                                                                                                                                                                                                |
|----------------------------------------------------------------------------------------------------------------------------------------------------------------------------------------------------------------------------------------------------------------------|
| <p>○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법’인 본 법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li> <li>- 정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본 법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li> </ul> |

제정안은 서비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논의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보건·의료 분야’ 적용 제외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윤준병의원안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사항에 대해서 적용 제외하였으나, 김영환의원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제정되어 202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법」도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포함하였음.

한편, 송언석의원안은 이와 같이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과거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첫째, 이미 안 제4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등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정부가 ‘의료 영리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의료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특별히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공성 훼손우려가 크지 않음.

둘째, 본 법률안에는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보건·의료 분야 자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세제·연구개발·해외진출 지원 등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음.

반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안 제5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안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

원회”의 심의대상에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의 명목으로 ‘의료 영리화’ 등을 비롯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음.

둘째, 제정안과 같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안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개별법의 규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예컨대 「의료법」의 의료 공공성 유지 규정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보건·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동 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음.

[“보건·의료 분야” 제외 관련 제19대~제21대 국회 소위심사 요지]

| 구 분        | 논의 요지                                                                                                                                                                                                                                                                                                  |
|------------|--------------------------------------------------------------------------------------------------------------------------------------------------------------------------------------------------------------------------------------------------------------------------------------------------------|
| 제19대<br>국회 | ○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비영리 원칙 및 공공성이 훼손될 수 없도록 보완이 필요함</li> <li>- 국민 생활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함</li> <li>- 대통령과 여·야 대표 합의대로 보건·의료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li> </ul>                                                                                                 |
|            | ○ 보건·의료 분야 제외 불필요<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정부안처럼 한다고 해서 의료 영리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li> <li>-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보건·의료 제외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의료 영리화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보완을 하자는 것임</li> <li>- 보건·의료를 이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위원회 심의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
| 제20대       | ○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                                                                                                                                                                                                                                                                                       |

| 구 분      | 논 의 요 지                                                                                                                                                                                                                                                                                                                                                                                                                                                           |
|----------|-------------------------------------------------------------------------------------------------------------------------------------------------------------------------------------------------------------------------------------------------------------------------------------------------------------------------------------------------------------------------------------------------------------------------------------------------------------------|
| 국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정부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 추진된 적이 있으므로 우려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함</li> <li>- 이 법의 해석상 의료 공공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함</li> <li>- 이 법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범위에서 보건·의료를 원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면,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움</li> </ul>                                                                                                                                                                                                       |
|          | <p>○ 보건·의료 분야 제외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고, 서비스산업으로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함</li> <li>- 이 법으로는 의료 공공성이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의료 분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li> <li>-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음</li> <li>- 의료 영리화는 반드시 국회 심사를 통해 「의료법」 등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 기본법만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음</li> <li>- 의료 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두거나, 서비스산업발전 위원회 산하에 “보건복지소위원회”와 같은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
| 제21대 국 회 | <p>○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이전의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부분임</li> <li>- 의료민영화 등 우려했던 사항을 해소시키면서 당초 안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완된 것임</li> </ul>                                                                                                                                                                                                                                                                               |
|          | <p>○ 보건·의료 분야 제외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ul>                                                                                                                                                                                                                                                                                                                                               |

참고로,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윤준병의원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 등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음.<sup>24)</sup>

24) 김영환의원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음.

## ※ 제정안 조문

| 제정안                                                                                                                                                                                                                                                                                        |
|--------------------------------------------------------------------------------------------------------------------------------------------------------------------------------------------------------------------------------------------------------------------------------------------|
|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라.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안 제2장 :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부터 안 제8조)

| 제 정 안                                                                                                                                                                                                                                                                                                                                                                                                                                                                                                                                                                                                                                                                                                                                                                                                                                                                                                                                                                                                                                                                                  |
|----------------------------------------------------------------------------------------------------------------------------------------------------------------------------------------------------------------------------------------------------------------------------------------------------------------------------------------------------------------------------------------------------------------------------------------------------------------------------------------------------------------------------------------------------------------------------------------------------------------------------------------------------------------------------------------------------------------------------------------------------------------------------------------------------------------------------------------------------------------------------------------------------------------------------------------------------------------------------------------------------------------------------------------------------------------------------------------|
| <p>○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시행</li> <li>- 기본계획 포함사항 :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규제·제도 개선 및 R&amp;D 촉진, 창업·투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산업 간 융·복합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산, 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기본계획 변경할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li> <li>-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li> <li>-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가능</li> </ul> <p>○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시행</li>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재경부장관에 제출</li>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li> </ul> <p>○ 추진현황 및 실적의 점검(안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해 결과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li> <li>-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점검 결과 반영한 개선의견 통보 가능</li> <li>- 재경부장관은 점검 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 가능</li> </ul> <p>○ 실태조사(안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실태조사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 가능.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li> </ul> |

안 제2장은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관계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이 큰 서비스산업의 정책결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규정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분   |              | 의안별 규정 여부  |            |            |
|------|--------------|------------|------------|------------|
|      |              | 송언석<br>의원안 | 윤준병<br>의원안 | 김영환<br>의원안 |
| 기본계획 |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 ○          | ○          | ○          |
|      | 위원회 심의 거쳐 변경 | ○          | ○          | ○          |
|      | 확정시 국회 제출    | ×          | ○          | ×          |
|      | 변경시 국회 제출    | ×          | ×          | ×          |
| 시행계획 |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 ×          | ○          | ○          |
|      | 위원회 심의 거쳐 변경 | ×          | ×          | ×          |
|      | 확정시 국회 제출    | ×          | ○          | ○          |
|      | 변경시 국회 제출    | ×          | ×          | ×          |

또한, 기존 송언석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과 동일하게 김영환의원안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또는 기본계획 포함)의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김영환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 결과 사업의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계획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임.

2)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구성 및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 안 제13조)

| 제 정 안                                                                                                                                                                                                                                                                                                                                                                                                                                                                 |
|-----------------------------------------------------------------------------------------------------------------------------------------------------------------------------------------------------------------------------------------------------------------------------------------------------------------------------------------------------------------------------------------------------------------------------------------------------------------------|
| <p>○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 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사항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관련 규제·제도 개선 및 재정·세제·금융 지원, 인력 양성 및 창업·투자 활성화, 산업 간 융·복합 및 신사업 갈등 조정, 국제협력 및 서비스 수출 지원, 전문연구센터 설치 등 서비스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li> <li>- 위원장 2명(재경부장관 및 위촉위원 공동), 당연직 위원 및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촉위원이 과반수이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여성)</li> <li>-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위원회 차원의 의견 제시 또는 개선방안 권고 가능</li> <li>-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li> </ul> |

제정안은 재정경제부에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비스산업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심의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안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재정경제부장관과 위촉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 등은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성·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그리고 위촉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촉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관련 입법례로는 「방위사업법」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sup>25)</sup>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sup>26)</sup> 등이 있음.

---

25) 「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의 설립)

추가적으로, 다른 제정안과 다르게 김영환의원안은 위촉위원의 과반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7)</sup>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sup>28)</sup>함으로써 최소한 여성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은 더 나아가 과반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다양성 및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특히 여성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40% 보장) 규정한 취지는 어느 한 성별이 독점하지 않는 '성별 균형'에 있는데, 특정 성별이 과반수가 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

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송언석의원안·윤준병의원안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28)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다른 성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보이며, 신기술 융·복합, 전문 기술 서비스 등 전문성이 필요한 위촉위원의 구성에서 성별 쿼터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적임자를 찾지 못해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거나 경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따라서 논의 과정에서 서비스산업 내 여성 전문가의 공급 현황과 정책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반수 위촉'이라는 강제 규정을 둘 것인지 혹은 '노력 의무'나 '40% 기준 준수' 등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참고로, 안 제9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신설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5년)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sup>29)</sup>

---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산업 간 융·복합 추세, 여러 부처가 연 관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범부처 민관 합동 법정 위원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산 업구조의 체질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과제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 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경우 매번 위원회의 연장·폐지 필요성 검토를 반복하게 되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입장임.

---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제 정 안                                                                                                                                                                                                                                                                                                                                                                                                                                                                                                                  |
|------------------------------------------------------------------------------------------------------------------------------------------------------------------------------------------------------------------------------------------------------------------------------------------------------------------------------------------------------------------------------------------------------------------------------------------------------------------------------------------------------------------------|
| <p>○ “갈등조정기구” 구성·운영(안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기구 설치 가능</li> <li>- 갈등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갈등조정기구를 통한 합의사항 존중해야 함</li> <li>- 정부는 갈등해결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재정적 지원 가능하나, 갈등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액 환수 가능</li>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조정기구 통한 합의사항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li> <li>- 갈등조정기구의 위원은 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교원이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서비스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li> </ul> |

제정안 제12조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정부는 갈등해결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조정기구를 통한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갈등조정기구의 위원은 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교원이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서비스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는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의사에 기하여 사법적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정한 제3자의 관여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sup>30)</sup>로, 조정과 중재로 나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해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임.

제정안 제12조의 갈등조정기구는 상기한 기준에 따를 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 또는 민간단체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sup>31)</sup>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설치한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으로 보임.

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김영환의원안은 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면서 위원은 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서비스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

---

30)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670.

3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672.

조정은 누가 조정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①법원에 의한 조정, ②행정기관이 설치한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 ③한국소비자원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④민간전문가나 명망가에 의한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sup>32)</sup>

이는 기존의 갈등 조정이나 자문위원회는 주로 대학교수(교원)나 변호사 등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교원, 법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 전문가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신·구 산업 간 갈등 해결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둘째, 김영환의원안은 갈등조정기구가 갈등해결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해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갈등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갈등 당사자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갈등 조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

32) 윤준병의원안에서는 갈등조정기구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송언석의원안에서는 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나 ‘갈등조정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셋째, 갈등조정기구에 의한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의 효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의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이 밖에도 안 제12조제1항의 “신사업”은 안 제9조제2항제12호의 “새로운 서비스”와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제정안 조문

| 제정안                                                                                                                                                     |
|---------------------------------------------------------------------------------------------------------------------------------------------------------|
| 제2장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 제5조(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 2.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
|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 5. 서비스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방안                                                                                                                                    |
| 6.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
| 7. 서비스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

## 제정안

8.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신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에 관한 사항
10. 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서비스 수출 촉진 방안
11.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12.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이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추진 현황 및 실적의 점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 제정안

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사업의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비스산업 관련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9.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공급 등 인력정책에 관한 사항
10.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 제정안

융·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서비스 수출에 관한 사항
12.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따른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조정  
에 관한 사항
13.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5. 제7조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16. 제13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개선 방안 권고에 관한 사항
17. 제28조에 따른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제32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서비스  
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조사·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및 20명 이내  
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은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 제정안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사전 심의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갈등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신사업 출현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② 갈등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갈등조정기구를 통한 합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기구가 갈등해결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해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갈등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조정기구를 통한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갈등조정기구의 위원은 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서비스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정안

⑥ 그 밖에 갈등조정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그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안 제3장 :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 제 정 안                                                                                                                                                                                                                                                                                                                                                                                                                                                                                                                                                                                                                                                                                                                                                                                                                                                                                                                                                                                                                                                                                                                                                                                               |
|-----------------------------------------------------------------------------------------------------------------------------------------------------------------------------------------------------------------------------------------------------------------------------------------------------------------------------------------------------------------------------------------------------------------------------------------------------------------------------------------------------------------------------------------------------------------------------------------------------------------------------------------------------------------------------------------------------------------------------------------------------------------------------------------------------------------------------------------------------------------------------------------------------------------------------------------------------------------------------------------------------------------------------------------------------------------------------------------------------------------------------------------------------------------------------------------------------|
| <p>○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등(안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노력</li> <li>-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성·발전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li>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및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령 등을 해석·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li> </ul> <p>○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안 제15조부터 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li> <li>-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시책 수립.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과기부장관과 협의</li> <l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견 제출</li> <li>- 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실시 및 연구개발 결과 보호 지원</li> </ul> <p>○ 표준화(안 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여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li> </ul> <p>○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안 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인공지능·블록체인 및 데이터기술 등(“신기술”)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관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 마련</li> <l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전략, 융·복합 촉진 전략 등을 포함</li> <li>-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을 받은 사례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모델 중 재정 감축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li> </ul> |

안 제3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서비스 표준 제정 및 4차 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의 활용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정부가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안 제14조는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김영환의원안은 동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성·발전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및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령 등을 해석·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개선 의지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에 관해 살펴보면, 안 제15조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언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시책(施策)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필요한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일한 내용의 송언석의원안·윤준병의원안에 대하여 장관급 회의체(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상위 회의체(의장: 대통령)에 제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정 분야 투자확대 의견 제출을 법령화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음.<sup>33)</sup>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안 제15조제4항은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며, 하위 회의체 의견의 상위 회의체 제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다음, 안 제16조의 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sup>34)</sup>

인증제도는 공신력 있는 정부가 연구개발 성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인증받은 자는 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구매지원 및 포상 등을 받는 등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p>35)</sup>을 비롯한

33) 김영환의원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음.

34) 현재는 송언석의원안·윤준병의원안과 동일하게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3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여러 입법례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제19조(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제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쓰임에도 같은 조 내용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 제목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제정안 조문

| 제정안                                                                                                                   |
|-----------------------------------------------------------------------------------------------------------------------|
| 제3장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
| 제14조(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성·발전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및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령 등을 해석·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5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2.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
3.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개발
4. 기초·응용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施策)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방향
2.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5.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동향, 우수사례, 시장상황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④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구매지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지식재산으로서의 권리(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 제정안

다)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다른 산업 및 기술과 결합되거나 서비스 간 결합되어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준을 제정하고, 서비스 표준이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19조(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인공지능·블록체인 및 데이터기술 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보급, 관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해당 서비스산업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전략, 신기술과 해당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례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중 재정 수요의 감축 효과가 입증된 모델에 대해서는 이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바.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안 제4장 :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 1) 서비스산업 융·복합 활성화 등 신서비스 개발 촉진(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제 정 안

-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등 지원(안 제20조)
  -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 융·복합 활성화 지원 위한 시책 수립·시행 가능
  - 서비스산업 융·복합 활성화 위해 연계프로그램 개발·시행,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정보체계의 구축 등 지원 가능
-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안 제21조)
  - 재경부장관은 서비스산업 융·복합 활성화 및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등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구성·운영 가능
  -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은 서비스산업 융·복합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혁신사례 조사, 연구개발 결과물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수행
  - 재경부장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지원 가능
- 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안 제22조)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서비스 수요변화에 대응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또는 조달시장 진출 지원 가능
- 신사업의 인·허가 등(안 제23조)
  - 융·복합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허가등 신청 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적용 및 제재처분 여부 등에 대한 확인(“비조치의견”) 신청 가능
  - 비조치의견 신청은 30일 이내 회신해야 하며, 회신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어떠한 제재처분도 불가함
  - 비조치의견 절차 거친 신사업 등의 인·허가 등에 있어 법령이나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 반려 또는 불합리한 보완 등 요구 금지
  - 인·허가 등 이후 사업자에게 사후 보완 요구, 요구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을 시 그 요구를 성실히 이행
  - 요구 받은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인·허가 등을 취소, 정지, 철회 가능

안 제4장은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등 지원,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 및 신사업의 인·허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등 신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다만, 동 내용은 여러 부처의 권한이 중첩되는 분야로서 국무총리실 등 다른 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안 제21조의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감독관청과의 관계 및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정부출연기관법」<sup>36)</sup>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되고, 동법 제10조<sup>37)</sup>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안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설치

---

36) 「정부출연기관법」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37) 「정부출연기관법」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하는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산하로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이 구성될 것인바, 국무총리가 감독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에 있어 부처 간 권한다툼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정부출연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둘째, 안 제22조의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을 위해 안 제2항에서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서비스 신산업은 대상의 불특정성과 광범위성 및 다부처 연계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의 중복신청 및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sup>38)</sup>, 「산업융합촉진법」<sup>39)</sup> 등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40)</sup>.

또한, 김영환의원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

---

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39) 「산업융합촉진법」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40) 안 제22조뿐만 아니라 안 제29조(창업지원)도 서비스산업 분야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겠음.

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제재처분 여부 등에 대한 확인("비조치의견")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비조치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어떠한 제재처분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현재 금융위원회<sup>41)</sup> 및 공정거래위원회<sup>42)</sup> 등에서 고시를 통하여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술 발전 속도가 법령 정비 속도보다 빠른 융·복합 산업의 특성상, 사업자는 인·허가 여부나 사후 제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비조치의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추진 전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줌으로써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사업의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1)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안 제2항에서는 ‘비조치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어떠한 제재처분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사후 감독권을 과도하게 기속하여 회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공익적 위해나 환경·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행정적 개입이나 시정 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동 문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회신의 효력 관련 유사 사례]

| 고시명                                                                     | 내 용                                                                                                                                                                                                                                                                                                                                                                                                                                                                                  |
|-------------------------------------------------------------------------|--------------------------------------------------------------------------------------------------------------------------------------------------------------------------------------------------------------------------------------------------------------------------------------------------------------------------------------------------------------------------------------------------------------------------------------------------------------------------------------|
| 법령해석<br>및<br>비조치의<br>견서<br>업무처리<br>에 관한<br>운영규칙                         | 제12조(비조치의견서의 효력) ①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u>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u><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u><br>1.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br>2.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br>3.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br>4.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br>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독점규제<br>및<br>공정거래<br>에 관한<br>법률 등의<br>위반여부<br>사전심사<br>청구에<br>관한<br>운영지침 | 제9조(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u>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br>제10조(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u>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u>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또한, 융·복합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 특성상 소관 부처가 다수인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수 부처가 연관된 사안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한 다부처 간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타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자가 허위 자료 제출 시의 효력 상실 또는 반려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회신(30일 이내)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사례를 참고하여 예외적인 기한 연장 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임.

#### [허위 자료 제출 및 기한 연장 관련 유사 사례]

| 고시명                                                              | 내 용                                                                                                                                                                                                                                                                                                                                                    |
|------------------------------------------------------------------|--------------------------------------------------------------------------------------------------------------------------------------------------------------------------------------------------------------------------------------------------------------------------------------------------------------------------------------------------------|
| 독점규제 및<br>공정거래에<br>관한 법률<br>등의<br>위반여부<br>사전심사청구<br>에 관한<br>운영지침 | 제7조(회답) ①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u>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br><br>제8조(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회답을 하지 아니한다.</u>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br>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u>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u> |
| 법령해석 및<br>비조치의견서<br>업무처리에<br>관한<br>운영규칙                          | 제6조(처리절차) ⑩ 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u>처리기간 내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u><br><br>제10조(반려사유) 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u>반려할 수 있다.</u><br>6.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u>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u>                                                                                                |

## 2)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제 정 안                                                                                                                                                                                                                                                                                                                                                                                                                                                                                                                                                                                                                                                                                                                                                                                                                                                                     |
|---------------------------------------------------------------------------------------------------------------------------------------------------------------------------------------------------------------------------------------------------------------------------------------------------------------------------------------------------------------------------------------------------------------------------------------------------------------------------------------------------------------------------------------------------------------------------------------------------------------------------------------------------------------------------------------------------------------------------------------------------------------------------------------------------------------------------------------------------------------------------|
| <p>○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안 제2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재교육·재훈련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급 동향 조사 가능</li> <li>- 동향 조사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자료제출·의견진술 요청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li> <li>- 정부는 수급동향 조사결과 공표 가능하며,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해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가능</li> </ul> <p>○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안 제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동향 조사 고려해 산학연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취업연계, 연구시설·장비 확충, 자격 취득 지원 등의 사업 추진 가능</li> <li>-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가능</li> </ul> <p>○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지원(안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인력 양성 위해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서비스산업계 수요 매년 조사 가능하며,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 등을 설치·지원 가능</li> </ul> <p>○ 전문인력양성기관(안 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요건 갖춘 법인·단체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경비 지원</li> </ul> |

제정안은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지원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21대국회까지 논의된 제정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학과 등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서비스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위의 내용은 여러 부처의 권한이 중첩되는 분야로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안 제24조의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 주체와 관련하여, 안 제32조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수급동향 조사의 작성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24조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정부’가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2조제1항제3호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4조제3항의 학생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 등 교육기관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결과에 기속되어 학생 정원 운영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sup>43)</sup>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

---

43)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

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되, 의료인·의료기사·약사·한약사·수의사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대학은 학칙을 통해 학생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해당 규정은 기속규정이 아니어서 학생 운영 정원이 기속될 가능성은 낮으며, 산업인력의 수급분석과 대학의 활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법례<sup>44)</sup>가 존재한다는 입장임.

셋째, 안 제26조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계약학과등”)의 설치·

---

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4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조(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④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운영과 관련된 조문은 동 제정법이 아닌, 교육부 소관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산학협력법」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부 소관 법률로,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법 제8조),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법 제8조의2) 및 보고·검사(법 제8조의3) 및 수요조사를 위한 산학협력 통계의 작성(법 제39조의2) 등의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산학협력법」 중 계약학과등 관련 조항]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3(보고·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법에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한 입법례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sup>45)</sup> 등에서

4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찾아볼 수는 있으나, 계약학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제1항은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재훈련을 위해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3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등 선정·지원 및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지원(안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성·혁신성 등을 토대로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우선 지원</li> <li>-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재정 수요 감축 효과, 서비스 수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li> </ul> </li> <li>○ 창업지원·세제지원·서비스 수출지원 등(안 제29조부터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규정</li> <li>- 서비스 수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경부장관 소속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 둬</li> </ul> </li> <li>○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설치(안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융·복합 연구 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 법에 따른 각종 업무를 위탁</li> </ul> </li> <li>○ 서비스산업 인식 개선 위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안 제33조)</li> </ul> |

제정안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을 통한 집중 지원, 창업지원·세제지원·서비스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는바,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31조제2항의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법체계를 감안할 때 제정안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새로이 정책협의회를 두지 않고 안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및

제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서 수출정책을 통일적으로 심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46)</sup>.

안 제9조제2항제10호는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서비스 수출 촉진 방안”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11조에는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둘째, 안 제32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을 지원하고 산업의 융·복합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정부출연기관법」상 정부출연기관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현재 연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본 법률안의 논의과정에서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 및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sup>47)</sup> 별도의 연구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의 측면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특히, 김영환의원안은 연구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

46) 참고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 규정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여러 법안에는 규율되지 않은 사항임.

47) 안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 연구센터는 사실상 공공법인의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임.

만, 송언석의원안·윤준병의원안의 경우와 달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음. 전문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송언석의원안·윤준병의원안의 경우와 같이 경비 지원을 명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32조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30조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에 대해 일반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조문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

한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등 유사 입법례<sup>48)</sup>가 다수 존재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등 지원이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조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 제정안 조문

| 제정안                                                                                                                                             |
|-------------------------------------------------------------------------------------------------------------------------------------------------|
| 제4장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
| 제20조(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 1.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외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서비스산                                                                                                       |

4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8조(세제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설치의 지원)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3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정안

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외 업종의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서비스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 서비스산업 융·복합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4. 서비스산업 융·복합 관련 전문인력과 융·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이하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2. 국내외 서비스산업 융·복합 연구개발 혁신 사례 조사 및 융·복합 연구개발 수요 발굴
3. 서비스산업 융·복합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및 융·복합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급 및 확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정안

정한다.

제22조(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조달기업에 대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2. 인구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실시 및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신사업의 인·허가등) ① 융·복합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제재처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하 이 조에서 "비조치의견"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비조치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어떠한 제재처분도 하지 아니한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등에 있어, 법령이나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 반려 또는 불합리한 보완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인·허가등이 이루어진 이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 발생, 안전·환경·보건 상의 중대한 위해 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후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후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정지·취소·철회할 수 있다.

제24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
2. 서비스산업 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사업 진출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

## 제정안

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재교육 또는 재훈련에 필요한 정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제24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 기업 현장연수사업
3. 서비스 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서비스산업 기술 교육 사업
5. 서비스 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6.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7. 서비스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활성화 및 자격 취득 지원 사업
8.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
9. 그 밖에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정부는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서비스산업계의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

제27조(전문인력양성기관)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산업 인력을 재교육 또는 재훈련하는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3. 서비스산업 관련 업력과 전문성 및 교육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별 성장성, 혁신성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하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재정 수요 감축 효과, 서비스 수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기준·절차,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창업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세제·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

제30조(세제지원)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서비스 수출 지원) ① 정부는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2. 서비스 수출 타당성 분석 및 시범 서비스 개발
3. 서비스 수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4. 국제 공동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
5.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6. 서비스 수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②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 주요 국가의 정부 지원 정책 등 연구
2.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등 연구
3.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수급동향 조사
4. 업종별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한 유망 서비스산업 발굴
5. 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서비스산업 인식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사. 보칙(안 제5장 :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부칙

| 제 정 안                                                                                                                                                                                                                                                                                                                                                                                                                                                        |
|--------------------------------------------------------------------------------------------------------------------------------------------------------------------------------------------------------------------------------------------------------------------------------------------------------------------------------------------------------------------------------------------------------------------------------------------------------------|
| <p>○ 보 칙(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안 제34조)</li> <li>- 재경부장관 권한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위임·위탁(안 제35조제1항)</li> <li>- 재경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안 제35조제2항)</li> <li>-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안 제36조)</li> </ul> <p>○ 부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li> <li>-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안 부칙 제2조)</li> </ul> |

안 제34조의 통계의 작성·관리와 관련하여, 통계의 기준설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관장<sup>49)</sup>하고 있으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 제35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데, 안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35조의 제목(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업무”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49) 「정부조직법」 제27조(국가데이터처)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

## ※ 제정안 조문

| 제정안                                                                                                                                    |
|----------------------------------------------------------------------------------------------------------------------------------------|
| 제5장 보 칙                                                                                                                                |
| 제34조(통계의 작성·관리)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 관련 통계를 포함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②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36조(청문) 정부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문 의 처

02)6788-5153

## 참고 1

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24.12월) 체계도

## 비전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

## 목표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35년 70% 수준으로 제고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전산업 대비)  
: ('23년) 63.0% → ('35년) 70% 수준

## 4 대 과 제

### ① 서비스 신산업 육성

- ✓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기업 도약 지원
- ✓ 데이터 성장기반 마련, 거래·유통 활성화
- ✓ 자율주행 다변화 등 모빌리티 혁신 지원

### ②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

- ✓ 방산·원전 등 주력 제조업 MRO 시장 육성
- ✓ 제조과정 전반 서비스 투입 확대
- ✓ 제조-서비스 융합 BM 확산 기반 마련

### ③ 서비스업 규모화·표준화 지원

- ✓ 고품질 숙박시설 공급 확대
- ✓ 장기요양기관 공급 확대 및 규모화
- ✓ 표준모델 개발 등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 ④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 ✓ 향후 5년간('25~'29년) 66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준) 수출금융 지원
- ✓ 다자개발은행(MDB) 조달, ODA 연계 등 서비스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⑤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

####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 ✓ ICT·SW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확대
- ✓ 산업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융합형 인재 양성
- ✓ 서비스 전문인력 지역육성 과정 신설 및 인력난 해소 지원

#### 서비스 R&D 고도화

- ✓ R&D 사례 보완 등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
- ✓ 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간 서비스 R&D 투자 촉진

## 참고 2

## 서비스산업 고용 · 부가가치 비중 및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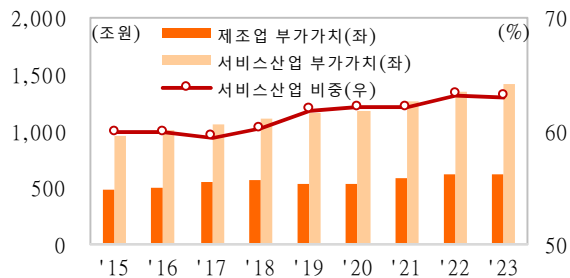
-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60% 초반대 수준에서 정체중인 가운데, 주요국과 큰 격차 지속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21년, 한국생산성본부(OECD Stats)  
: (韓) 62.4 (美) 80.5, (英) 79.9 (佛) 79.4 (日) 70.1 (獨)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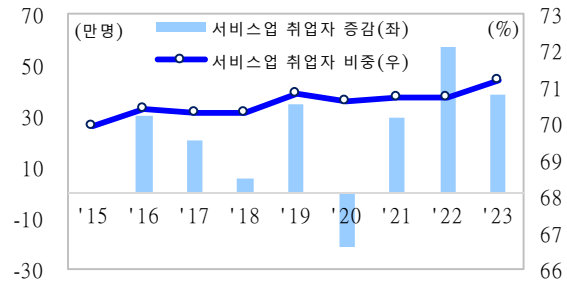
- (고용 비중)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조한 상황

\* 서비스업 고용 비중(%), '21년, OECD Stats / 한국생산성본부(OECD Stats)  
: (韓) 70.0 (英) 83.5 (佛) 80.7 (美) 80.1 (獨) 75.0 (日) 73.4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추이(통계청)>



- (생산성) 진입장벽 등에 기인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OECD 하위권(27위) 수준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제조업의 47.5%)

\* 서비스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만 달러, '21년, 한국생산성본부)  
: (韓) 6.6 (美) 12.8 (佛) 8.6 (獨) 7.6 (英)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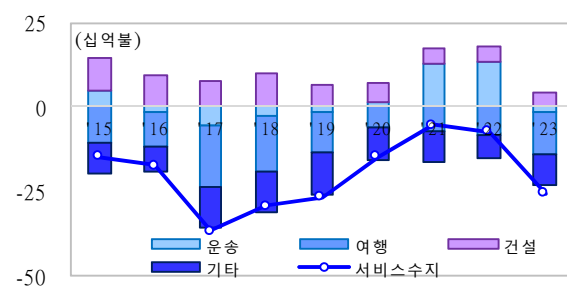
- (국제수지) 연구개발·사업서비스 등 기타수지, 여행수지 등을 중심으로 만성적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OECD)>



\*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년 기준

<부문별 서비스 국제수지 추이(한은)>



### 참고 3

## 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향후계획

| 정책 과제                             | 추진시기     | 부처·기관    |
|-----------------------------------|----------|----------|
| <b>1. 서비스 新산업 육성</b>              |          |          |
| ▶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기업의 도약 프로그램 참여 지원    | '25.     | 중기부      |
|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 검토      | ~'25.1/4 | 금융위      |
| ▶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세부기준(시행령, 고시) 마련 | ~'24.12  | 개보위      |
| ▶ 기업정보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실증         | '25.     | 과기부      |
| ▶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지원 실증    | '24.12~  | 과기·복지부   |
| ▶ 국가 데이터 인프라(One-윈도우) 구축          | '25.~    | 과기부      |
| ▶ 표준 데이터 카탈로그 정의·배포               | '25.~    | 과기부      |
| ▶ 자율주행 서비스 다변화(단거리·여객→장거리·화물)     | '24.下~   | 국토부      |
| ▶ K-City 3단계 고도화                  | ~'25.    | 국토부      |
| ▶ UAM 수도권 실증(인프라 구축 후 실증비행)       | '24.12~  | 국토부      |
| ▶ UAM 시범사업 지자체 사전준비 지원('25년 2개소)  | '25.     | 국토부      |
| ▶ UAM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구체화         | ~'24.12  | 국토부      |
| ▶ 서비스 新산업 분야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 발굴·추진    | '25.~    | 국조실 등    |
| ▶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운영                | 법 제정시    | 기재부      |
| <b>2.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b>          |          |          |
| ▶ K-방산 MRO 육성계획 수립                | ~'25.12  | 방사청, 국방부 |
| ▶ 원전 정비, 유지보수 등 원전 서비스 수출 지원      | 계속       | 산업부      |
| ▶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4.11   | 해수부      |
| ▶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계속       | 산업부      |
| ▶ 고부가 항공정비산업 성장촉진 지원              | '24.下~   | 국토부      |
| ▶ 제조기업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 '25.     | 산업·중기부   |
| ▶ 제조과정 전·후방 과정에 서비스 투입 확대         | '25.     | 산업·중기부 등 |
| ▶ 소프트웨어 융합 디지털 서비스(XaaS) 기획·개발 지원 | '25.     | 과기부      |
| ▶ 기술보증기금 내 M&A 종합플랫폼 구성           | '25.上~   | 중기부      |
| ▶ 생체정보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25.上    | 개보위      |
| ▶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 추진      | '25.上~   | 개보위      |
| ▶ 자기적합선언 제품 인증대상 품목 확대            | '25.下    | 산업부      |
| <b>3. 서비스업 규모화·표준화 지원</b>         |          |          |
| ▶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등 건축규제 합리화          | ~'25.    | 교육·문체부   |

|                                                |           |                   |
|------------------------------------------------|-----------|-------------------|
| ▶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확대 위해<br>향후 5년간 2.5조원 규모 우대금융 제공 | '25.~'29. | 금융위               |
| ▶ 농어촌민박·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 '24.12~   | 문체부               |
| ▶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25.下    | 기재·문체·<br>복지·농식품부 |
| ▶ 요양시설 공급부족 지역 등의 설치기준 개선 검토                   | '25.      | 복지부               |
| ▶ 요양시설 신규서비스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 검토                 | '25.      | 복지부               |
| ▶ 통합재가서비스 도입<br>(「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24.12   | 복지부               |
| ▶ 사회서비스 표준 공유화 모델 개발('24년)·확산('25년~)           | '24.~     | 복지부               |
| ▶ 지역사회서비스 가격 탄력제 시범운용(24년)·확산 검토(25년~)         | '24.~     | 복지부               |
|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 마련                        | '25.      | 복지부               |
| ▶ 중소형 렌터카 업체 간 공동운수협정 활성화                      | 계속        | 국토부               |
| ▶ 외식 브랜드 현지 수출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연계 확대               | '25.      | 농식품·산업부           |

#### 4.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                                                    |           |                  |
|----------------------------------------------------|-----------|------------------|
| ▶ 서비스 분야 향후 5년간 66조원 수출금융 지원                       | '25.~'29. | 기재·산업·중기부<br>금융위 |
| ▶ 수출바우처 내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트랙 신설                        | '25.      | 중기부              |
| ▶ 잠재적 바이어 대상 현지실증 지원 메뉴 신규 개발                      | '25.      | 산업부              |
| ▶ 현지 AC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확대                            | '25.上     | 중기부              |
| ▶ 바이코리아 내 서비스 전용관 별도 페이지 구축                        | ~'25.上    | 산업부              |
| ▶ MDB(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개최                             | '24.11    | 기재부              |
| ▶ MDB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 '25.      | 기재부              |
| ▶ 그린 ODA 연계 국내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 '25.      | 환경부              |
| ▶ KSP 활용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 지식공유 추진                       | ~'26.上    | 기재부              |
| ▶ ODA 연계 개도국의 K-에듀테크 도입 지원                         | '24.~     | 교육부              |
| ▶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관련<br>국가·산업별 교역환경 개선효과 사례조사 실시 | ~'25.上    | 산업부              |
| ▶ MEGA TBT 포럼에 유망서비스 분야 추가                         | '25.      | 산업부              |

#### 5.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

|                                 |         |          |
|---------------------------------|---------|----------|
| ▶ 한국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직업훈련 확대         | '25.    | 고용부      |
| ▶ 전공자율선택제 현장 안착 지속 추진           | 계속      | 교육부      |
| ▶ RISE 내 서비스산업 분야 교육과정 운영 자문·지원 | '24.12~ | 지자체, 교육부 |
| ▶ 서비스 R&D 체크리스트 설명·예시 보완        | ~'24.12 | 과기·기재부   |
| ▶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사례 보완           | ~'24.12 | 과기·기재부   |

|                                                          |      |     |
|----------------------------------------------------------|------|-----|
| ▶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                                    | '25. | 전부처 |
| ▶ 중소기업 대상 新서비스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ICT 활용 솔루션 구축 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 | 계속   | 중기부 |
| ▶ 기업부설연구소 R&D 지원 근거법률 마련 추진                              | 계속   | 과기부 |